주 문

1. 피고(반소원고) C은 원고(반소피고)들에게 4,713,991원 및 그 중 1,794,111원에 대하 여는 [redacted]부터 [redacted]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%의, 2,919,880원에 대하여는 [redacted]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원고(반소피고)들은 공동하여 피고(반소원고) C에게 18,148,220원 및 이에 대하여 [redacted]부터 [redacted]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3. 원고(반소피고)들의 피고(반소원고) C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, 피고 D에 대한 청구와 피고(반소원고) C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.

4. 소송비용 중 원고(반소피고)들과 피고(반소원고)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, 반소를 통틀어 그 중 1/2은 원고(반소피고)들이, 나머지는 피고(반소원고) C이 각 부담하고, 원고(반소피고)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(반소피고)들이 부담한다.

5. 제1,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